채무자의 채무리행재산보존을 위한 채권자의 청구권문제

윤 종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만들어져도 각이한 환경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다 예견하여 규정할수는 없으며 그 일반적요구 즉 표준만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6~147폐지)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채무리행문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며 따라서 민법은 그에 대하여 일일이 다 규제할수는 없다.

그러나 채무리행과 관련된 분쟁문제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실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수 있게 법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채무리행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그에 대한 담보권이 직접 법에서 규제되여 있지 않고 당사자들간에도 설정된것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채무관계에 대한 법적규제의 일반원리에 맞게 국가의 사법업무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며 채권자는 특정된 채무자의 채무리행을 통하여 자기의 채권상리익을 실현한다.

그러나 채권이 아무리 법적으로 확정된것이라고 하여도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채권상의 리익이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만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리행할만 한 재산이 없으면 법적강제력을 발동하여도 채권자의 채권은 청구권으로 계속 존재할뿐 채권상의 리익은 실현될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채권자는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보증이나 저당권, 전당권, 류치권, 계약담보금과 같은 별도의 재산적담보를 설정하는것을 통하여 그 실현을 담보받 게 된다.

채권실현을 위한 이러한 별도의 담보설정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채무리행의 성실 성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가 장악한 담보재산에 의하여 채권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될수 없었을 때 채무자가 채무리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거나 확보된 채무리행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채권자가 재판소에 채무의 강제리행이나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채무자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자기의 채권이 실현될수 없게 되는 경우에 채무리행재산을 보존하기위하여 취할수 있는 조치로 인정되는것이 채권자의 대위권과 채권자의 취소권이다.

채무리행재산의 보존을 위한 채권자의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공화국민법에 직접 규제된것은 없으나 채무관계의 일반적원리와 그에 따라 적용되여야 할 현행공화국민법 제3장(제24-30조)의 민사법률행위제도에 기초하여 설정될수 있다.

채무리행은 일반적으로 채권채무의 효력에 기초하여 발생된다. 채무자가 자기 소유 재산의 전부로써 계약된 채무리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은 채권채무의 일반원리에 기초 한 요구이다.

채권채무관계가 일단 성립되면 채무자의 재산전부가 채권실현을 담보하는 대상으로 된다. 여기서 채무자재산의 전부라고 할 때 그것은 채무자의 실질소유재산과 남에게서 받 아야 할 재산(적극재산 즉 채권), 남에게 물어야 할 재산(소극재산 즉 채무)의 전부가 포함되다.

그런데 채무불리행에 대처하여 채무리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보상판결을 집행할 때 채무자소유의 모든 재산들이 그 채무리행의 대상에 속한다. 이때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강제집행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응당하게 채무자의 소유로 되여야 할 대상들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허물로 늘지 못하거나 줄어들어 채무를 리행할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것은 채권자 에게는 불공정한것으로 된다.

이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리행재산의 보존을 위한 법적가능성을 주는것은 채무리행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이렇게 채무자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막기 위하여 재판소에 채무리행재산보존청구를 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것은 사법실천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실현을 태공하거나 자기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채권실현을 위한 재산부족을 초래하는것을 채권자가 보면서도 그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권이 채권 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채권실현은 언제 가도 담보되지 않게 된다.

채무자의 채무리행재산보존을 위한 채권자의 청구권문제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 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이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채권행사를 태공하여 채권자의 채권실현에서 채무자의 지불능력부족이라는 위험이 조성될 때 채권자가 재판소에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것을 요구할수 있는 청구권이다.

채권자대위권의 범위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한도내에 국한된다. 이때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채권자의 대위권은 대리권도 아니고 우선권도 아니다. 그것은 채권의 법적효력의 표현이며 채권자에게 응당히 주어져야 할 고유한 권리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거나 채무자의 거래를 취소시킬수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

채권자는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행위를 임의로 직접 할수 없으며 반드시 재판소에 청구하여 소송상 그 권리가 인정된데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채무의 강제집행대상은 실지 채무자소유의 재산에 국한된것이지 그의 채권상의 재산까지는 포함되지 않기때문이다.

대위권행사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켜 채권자의 채권상리익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채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주어져야 한다.

우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채무자앞에 채무를 지니지 않고있거나 채무가 이미 다 청산된 경우에는 그러한 대위권의 행사문제는 설정될수 없다.

또한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지만 채권자에 의하여 그것을 리행받으면 채무자의 채권이 상실될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을 실현하여 채무를 리행받으면 그것이 채권자의 채권집행의 대상으로 될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채무자의 채권행사의 고의적인 태공이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허물로 추정될수 있게 된다.

또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청산기한이 지났는데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청산기한이 지났는데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채권자의 채무자채 권에 대한 대위권이 인정될수 있다.

또한 채무자자신이 행사할 채권이 채무자에게만 전속되는 권리가 아니여야 한다.

채무자의 부양료청구권과 같이 채무자에게만 전속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대 위권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채무리행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법적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에로 이전되였지만 재판소의 승인밑에서만 채 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수 있다. 그것은 채권자대위권이 재판소의 법적판정에 의하여 인 정된것이고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얻어진 재산이 채무자소유관할에 이전되여도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충당되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얻어진 재산의 접수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가 그 접수도 대위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그것은 채권자대위권인정의 목적과 관련된다.

채무자의 채무리행재산보존을 위한 채권자의 청구권문제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이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실현재산의 부족이 초래된 경우 채권자가 재판소에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시켜줄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 리이다.

채무자가 채무리행시점에 와서 리행재산의 부족으로 채무리행무능력의 결과를 발생 시키면서도 그 재산을 자의로 처분하는것은 해당 채무자의 부당한 처분행위로 인정된다.

이 경우 채무자의 부당한 처분으로 채무를 리행할 재산이 부족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채권자는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소에 그를 취소시켜줄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실현에 방해를 주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면서도 그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극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기나 친척, 친우들에게 무상증여하여 채권자의 리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면 재판소는 채권채무관계의 일반원리에 따라 채권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채권자의 취소권을 인정하게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채무자와 제3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현존하는 채권실현에 손해를 준다는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주관적인 허물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이미 한 법률행위가 채권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을 줄이는 행위 즉 유언상속이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면제 등이면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

채무자의 유상처분행위는 그것이 채무리행대상의 량을 줄일수 있다는것을 응당히 알고있었거나 응당 알았어야 할 상태에서 이루어진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무상증여와 같은 행위는 그것이 채무리행대상의 량을 줄일수 있다는 건을 응당 알고있었거나 알았어야 할 상태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여야 한다.

또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채무자의 행위가 실제적으로 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채무리행의 대상을 줄이여 채권을 충족시킬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채무를 리행하여 채권을 충당시켜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으면서도 채무를 리행하여야 할 당시 채무리행재산을 줄이여 채권을 충족시킬수 없게 한 행위는 곧 채무위반으로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리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리행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처분하게 하는것이 정상적인 채무리행질서이고 채권보호의 방도로 된다.

채권자취소청구권의 행사를 재판소가 인정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효과를 일 으키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된 채무자의 행위는 그것이 채무자의 일방적행위이든 채무자와 제3자사이의 쌍방행위이든 관계없이 그 효력은 소멸되며 취소되기 전에 수익자가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령수하였으면 그것은 부당리득반환채무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그 리익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그 리익을 채무자의 일반재산가치에 포함시켜 채권실현의 재산으로 충당할 권리를 담보받는다.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은 채무자가 그에 대한 소송법상의 사전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요구할 때에는 사전청구절차가 없어도 재 판소는 이를 접수해결하여야 한다.

채권행사기간이 되였지만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실현을 방임하거나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리행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하거나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킬 권한을 소송절차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것은 채권의 공정한 보호를 실현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민사분쟁문제해결에서 나서는 현행민법규범들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리익에 맞게 안정되고 공정한 민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하 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